

#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

2020.03.01.

제65조(논문심사위원회)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,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단,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③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. 다만, 본 내규 제72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.

④ 논문심사위원은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제66조(논문심사위원 위촉) ①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회에는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이 최소 2명 포함되어야 하며, 1명 이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회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가 최소 1명, 최대 2명까지 포함되어야 하며, 그 외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또는 본교 동일전공분야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③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학과, 타 대학교,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④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2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